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21.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9월 6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9.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조례안은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고 15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중 침수피해 고위험 지역의 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 침수방지시설을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주택별 지원액 한도 명시와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 대상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 과거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 설치 지원에 관한 홍보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부터 안 제1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운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2022년 8월 ~ 2023년 3월에 걸쳐 서울시에서 시행된 ‘반 지하 주택 전수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대상이 2,352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풍수해에 취약한 반 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
----------	-----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 이성수·신흥식·임현호
·우경란 의원(4인)

1.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사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9. 13. ~ 9.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 제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편성 등)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 대상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관리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관리자 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